울산 다운2지구 우미 Lynn 더시그니처

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제출 안내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(입주대상자 자격 확인)에 따라 당첨자는 공급계약 체결 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.

유의사항

- **모든 제출서류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10.20.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**
-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 모든 증명서류는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등 모든 항목이 표기되도록 "전체포함" 또는 "상세"로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공급자격 적격 여부 확인 중 아래 서류 외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제1항 및 제52조제4항에 의거, 당첨자 서류는 최대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구비서류

구분	필수	추가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
공통 서류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.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) 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 /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
	○		인감증명서,인감도장	본인	•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본인 발급용에 한함 / 대리인 발급 불가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세대원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·비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)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체 표시 •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(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신혼부부 특별공급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	○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• 직계존속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(모든 정보 전체 포함 발급)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 •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
		○	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 제출 ※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. ※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(담당의사명, 의료기관등록번호,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 되어 있고,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)
		○	입양관계 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입양의 경우 (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)
	○		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	• 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(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재된 세대원 포함)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)
	○		소득증빙서류		• 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(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재된 세대원 포함)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※〈첨부1. 소득증빙서류〉 참조 ※ Fax 수신 문서, 복사본 등 접수 불가,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
		○	사실증명		• 소득이 없는 경우 "신고사실 없음" 발급
		○	부동산 자산보유 확인 서류	본인 및 세대원	•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(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) ※〈첨부2. 부동산 자산보유 확인 서류〉 참조
제3자 대리인 신청시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 (본인)	• 용도 : 위임용 (본인 발급용에 한함 / 대리인 발급 불가)
	○		위임장	–	• 청약자(본인)의 인감도장 날인, 견본주택 비치
	○		신분증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.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)

울산 다운2지구 우미 Lynn 더시그니처

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제출 안내

첨부1.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 (계속근무자)	① 재직증명서 (직인 날인)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/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(직인 날인)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 날인)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※ 근로 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,②,③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(이직)	① 재직증명서 (직인 날인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(직인 날인)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,② 해당직장
	전년도 일부기간 휴직	① 재직증명서(직인 날인) ※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정상근무개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 (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'으로 발급)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,② 해당직장
	전년도 전체기간 휴직 후 금년 복직	① 재직증명서(직인 날인)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 날인)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,② 해당직장
	월평균소득 추정이 불가능한 자 (계속 휴직)	① 재직증명서(직인 날인) ② 본인과 동일한 직장/직급/호봉인 사람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추정 ※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계약서나 월별급여명세표 혹은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,②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학원강사, 보육교사 등)	① 재직증명서 (직인 날인)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※ 금년도 신규 취업자는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(근무기간 및 급여액 기재, 직인날인 필수),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①,② 세무서
	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	① [국민연금 가입자]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[국민연금 미가입자]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본)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① [가입자]국민연금공단 [미가입자]세무서 ② 세무서
	법인대표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③ 법인등기사항증명서 (법인등기부등본)	①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해당 직장
기타	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 프리랜서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(직인 날인),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(직인 날인) ※ 직장이 다수인 경우 각각의 해촉증명서 모두 필요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 세무서,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
	국민기초생활 수급자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	① 주민센터
	일용직 근로자	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	① 세무서
	농업 종사자	[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]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[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경우(연금수령자)]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	세무서
무직	전년도 1월 1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③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※ 해당 기간의 소득이 비정규직 근로자(일용직 근로자 포함)에 해당할 경우 '비정규직 근로자/일용직 근로자' 소득 입증 서류를 준용함	① 견본주택 ② 해당직장/세무서 ③ 해당직장
	소득이 없는 경우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②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	① 견본주택 ② 세무서

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제출 안내

첨부2. 부동산 자산보유 확인 서류

해당자격	자산입증 제출서류		발급처
"부동산소유현황"이 있는 경우	필수	① 부동산소유현황 (세대원별 각각 발급) –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(토지)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)	①,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
		① 공동(개별)주택가격 확인서 (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)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–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·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(상가,오피스텔 등)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–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(상가,오피스텔 등)인 경우 – 서울시 : 'ETAX이용안내 〉조회/발급 〉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'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– 서울시 외 : '위택스 〉지방세정보 〉시가표준액 조회' 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	①,② 주민센터 ③ 서울시이택스(etax.seoul.go.kr), 위택스(www.wetax.go.kr)
	해당자	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	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(www.eum.go.kr)
"부동산소유현황"이 없는 경우	필수	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〉등기열람/발급 〉부동산 〉"부동산 소유 현황"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(전체 화면 캡쳐)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(재산세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)	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② 주민센터